

# 공정거래 자율준수

## CP운영지침서

문서번호 SJENI-CP-200  
제정일자 '24. 01. 15  
개정일자 24. 02. 22  
개정번호 1  
폐 이 지 1 OF 11

본 윤리규정지침서는 2024. 01. 15 (Rev. 0)부로 재정 함.

### 작성, 검토 및 승인

1. 제 목	공정거래 자율준수 CP운영지침서			
2. 발행일자	2024년 1월 15일	개정번호	1	
3. 개정사유	신설 항목 추가			
3. 작성	부서명	품질혁신부		
	구분	직위	이름	서명
	작성	차장	정송모	
	검토	상무이사	채양준	
4. 관련부서 검토				
5. 승인	대표이사	박홍원		

# 공정거래 자율준수

## CP운영지침서

문서번호 SJENI-CP-200  
제정일자 '24. 01. 15  
개정일자 24. 02. 22  
개정번호 1  
폐 이 지 2 OF 11

### 개정 이력

개정번호	항목번호	개정전 내용	개정일자	개정부서	비고
		개정후 내용			
0	전면	최초작성	'24.01.15	CP운영팀	6page
		해당없음			
1	제12조 2항	해당없음	'24.02.20	CP운영팀	6page
		제12조 2항 6번 신설 항목 추가			

# 공정거래 자율준수

## CP운영지침서

문서번호 SJENI-CP-200  
제정일자 '24. 01. 15  
개정일자 24. 02. 22  
개정번호 1  
폐 이 지 3 OF 11

### 규정(안) 본문

#### <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규정>

#### 제 1장 일반원칙

**제 1조(목적)**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(이하 'CP규정'이라 한다)은 기업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과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 2조(기본 원칙)** CP규정은 기업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, 본 규정에 반하는 기업의 방침 또는 규정이 있을 경우 CP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.

**제 3조(용어 정의)** CP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CP란 "Compliance Program"의 약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의미한다.
- CP는 CP의 취지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의한 시스템을 뜻한다.
-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.
-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,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, 시행령, 고시, 지침을 의미한다.
- 최고의사결정기구는 회사의 이사회에 해당한다.
- 자율준수관리자는 기업의 CP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, 최고경영자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임명한다.
- 자율준수부서장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·감독을 받아 CP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자를 뜻한다.
- 공정거래 담당은 CP 운영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해당한다.
- 위험관리 부서는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성이 높은 부서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서를 뜻한다.
- 임직원은 고용 형태나 종류와 무관하게 기업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뜻한다.
- 제재 조치는 임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CP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로써, 징계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다.
-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 담당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판단한 행위로써, 행정기관, 사법기관, 기타 제3자에 의한 문제 제기 및 판단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 담당이 직접 검토하여 법 위반 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현장 점검은 위험관리 부서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 업무행위 및 생산 서류를 공정거래 담당 주관하에 점검하고 조사하는 행위를 뜻한다.
- 자율준수편람은 기업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, 절차, 사례 등 CP 관련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.
- 인센티브는 CP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기업, 고객, 협력사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에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.

# 공정거래 자율준수

## CP운영지침서

문서번호	SJENI-CP-200
제정일자	'24. 01. 15
개정일자	24. 02. 22
개정번호	1
폐 이 지	4 OF 11

### 규정(안) 본문

## 제 2장 조직 및 업무

### 제1절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권한

- 제 4조(최고경영자의 의무)** ① 최고경영자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, CP가 기업 운명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.  
② 최고경영자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 
③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 
④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 5조(최고경영자의 권한)** ① 최고경영자는 CP 운영 관련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진다.  
②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추천하고 임명하여야 한다.  
③ 최고경영자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지원을 배분할 수 있다.  
④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.

###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등

- 제 6조(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)** ① 최고경영자와 이사회는 효과적인 CP 운영을 위해 임원 지위를 가진 자로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지식이 풍부하거나 CP를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.  
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여야 한다.  
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관리 부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.  
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.

**제 7조(자율준수관리자의 권리)** 자율준수관리자의 권리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
- 위 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
- 위 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권한
- 기타 CP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으로써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 받은 권리

# 공정거래 자율준수

## CP운영지침서

문서번호 SJENI-CP-200  
제정일자 '24. 01. 15  
개정일자 24. 02. 22  
개정번호 1  
폐 이 지 5 OF 11

### 규정(안) 본문

**제 8조(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)**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CP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
2.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CP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
3. 자율준수편람의 제·개정
4. CP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
5. 내부감시체계의 운영
6.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법규 위반 및 CP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
7. 위 6호에 따라 공정거래 법규 위반이 확인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
8. CP 운영 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 및 대상 임직원 선정
9. 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연도 CP운영계획을 포함한 각종 경영계획안 반영

**제 9조(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)**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,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 10조(공정거래 담당의 업무)** ① 공정거래 담당 소속 직원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.  
② 공정거래 담당부서는 제 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, 기업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.

### 제3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

**제 11조(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)**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협의회의 의장의 직을 맡는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의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위험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되, 필요한 경우 자율 준수관리자가 의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
- ③ 자율준수협의회의 간사는 CP운영팀이 맡는다.
- ④ 자율준수협의회의 실천리더는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위험 부서의 실무자로 임명한다.

**제 12조(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과 역할)**

-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# 공정거래 자율준수

## CP운영지침서

문서번호	SJENI-CP-200
제정일자	'24. 01. 15
개정일자	24. 02. 22
개정번호	1
폐 이 지	6 OF 11

### 규정(안) 본문

1.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,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, 제재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 조치 권고 및 자문
2.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부서간의 업무 갈등 조정
3. 각 위원별 담당부서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, 그에 따른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통보
4. 각 위원별 담당부서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
5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 자문
6. CP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사요구와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 여부에 대해 안건 상정을 의결 할 수 있다.

### 제4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

**제 13조(임직원의 의무)** CP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자율준수편람에 대한 숙지
2. 고객 및 외부 거래처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노력
3.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 업무수행 중 확인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제보
4.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CP 관련 교육 목표 달성

**제 14조(사전업무협의)**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수행할 경우 공정거래 담당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1. 동종업계 관계자의 접촉, 계약·구매·입찰사무, 타 계열사와의 거래,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작성과 제출
  2. 위 호 이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
- ②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 시 공정거래 담당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, 공정거래 담당은 임직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업무 협의 전 협의 대상 업무 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적용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 15조(내부고발)** ① 임직원은 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을 경우 이를 공정거래 담당 부서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.

- ②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제보하지 않거나 같이 행위를 한 경우 법 위반 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.

# 공정거래 자율준수

## CP운영지침서

문서번호 SJENI-CP-200  
제정일자 '24. 01. 15  
개정일자 24. 02. 22  
개정번호 1  
폐 이 지 7 OF 11

### 규정(안) 본문

#### 제 3장 CP의 운영 등

#####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

- 제 16조(자율준수 의지의 천명) ①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최고경영자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.  
② 위 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, 협력업체, 고객,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

#####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

- 제 17조(자율준수편람) ① 공정거래 담당은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  
② 위 1항에 따른 배포 시 위험관리 부서를 최우선으로 배포하여야 한다.  
③ 공정거래 담당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 및 변경 소요를 연 1회 이상 검토하여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.

- 제 18조(임직원에 대한 교육)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CP 관련 연간 교육 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하고 자율준수편람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

- 교육의 취지 및 목적
- 교육 대상자 및 부서
- 교육 전담강사의 지정 및 역할 정의
- 교육내용 및 교재 활용 방안
- 교육의 방법(온라인 / 오프라인 교육 구분 등)
- 교육성과 평가 방법 및 후속조치 방안
- 연간 교육일정

-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상대로 한 교육 과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한 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대표이사 및 임원은 CP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.
-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교육 미 이수자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등 CP 위반자를 월 주기로 확인하고 위 대상자에 대한 보수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보수 및 특별교육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자의 부서장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인사고과반영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건의 할 수 있다.

# 공정거래 자율준수

## CP운영지침서

문서번호	SJENI-CP-200
제정일자	'24. 01. 15
개정일자	24. 02. 22
개정번호	1
폐 이 지	8 OF 11

### 규정(안) 본문

-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교육 시행 후 임직원들의 이해수준 등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고, 이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년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
- ⑥ CP 관련 교육에 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CP 운영팀이 시행한다.

### 제3절 내부감시체계

**제 19조(내부감시체계)** ① 기업은 일상 업무에서 법 위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조치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
1. 위험 평가
  2. 사전업무협의제도
  3. 직접보고체계
  4. 내부고발시스템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결과를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 19조의1(위험 평가)**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담당 또는 감사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위반 행위 발생 등을 확인을 위한 위험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1차 사전 실태조사: 부서별로 지정된 자가 공정거래 담당이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 관련 공정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거래 담당 부서에 보고
  2. 2차 현장 심층조사: 공정거래 담당에서 위 1호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내부 제보를 통하여 확인된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직접 조사
- ② 위 1항에 따른 결과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1. 실시 회차 및 기간
  2. 시행의 주체(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, 위부 감사, 감사팀)
  3. 평가 대상 부서(선정기준 포함)
  4. 평가 결과(사업부서별, 임직원별 등)
  5. 미비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방안

**제 19조의2(사전업무협의제도)**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# 공정거래 자율준수

## CP운영지침서

문서번호 SJENI-CP-200  
제정일자 '24. 01. 15  
개정일자 24. 02. 22  
개정번호 1  
폐 이 지 9 OF 11

### 규정(안) 본문

- ② 공정거래 담당은 위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도 문서 시스템을 통해 회신하여야 한다.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메일 등을 활용해 먼저 회신할 수 있다.
- ③ 공정거래 담당은 위 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사전업무협의 실적은 반기별 1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 19조의3(직접보고체계)**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(자율준수관리자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행위를 포함한다)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.
- ② 최고경영자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제 19조의4(내부고발시스템)**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이 포함된 내부고발시스템을 공정거래 담당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라 설치된 내부고발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, 차별, 인사성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,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 소속 임직원은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 제17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현황을 연 2회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4절 제재 및 인센티브

- 제 20조(법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)**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등 제재 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자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.

- 임직원이 법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담당과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
  -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, 과징금,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,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의 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  - 위 1호 내지 2호 행위로 인해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과정에서 위 1항에 따른 행위 이외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 또는 CP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로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 공정거래 자율준수

## CP운영지침서

문서번호	SJENI-CP-200
제정일자	'24. 01. 15
개정일자	24. 02. 22
개정번호	1
폐 이 지	10 OF 11

### 규정(안) 본문

- 제 21조(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)**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용을 통한 회사의 법 위반 예방 및 법률 비용 감소에 기여한 임직원 및 CP교육 실적 우수 임직원 등 회사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CP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 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인센티브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1. 격려금 등 포상
  2. 자율준수관리자 상장 수여
  3. 해당년도 인사평가 시 가점
  4. 이 규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위반 행위 시 제재 경감 또는 면제
- ③ 기타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고 공정거래 담당이 시행한다.

### 제5절 효과성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

- 제 22조(CP 운영의 효과성 평가)**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동하여 CP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.
- ② CP 효과성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1. CP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
  2. CP 관련 교육성과
  3. CP 운영팀의 CP 업무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
  4. CP 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 운영 관련 기준의 제·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른 평가와 별개로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 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전문가 집단에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- 제 23조(효과성 평가의 활용 등)**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제18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위 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, 예산과 조직 운영의 변경, CP규정 개정 추진을 의결하여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 할 수 있으며, 이를 통지받은 최고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는 위 2항에 따른 조치 완료 시 그 결과를 회사 소속 임직원에게 자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

# 공정거래 자율준수

## CP운영지침서

문서번호 SJENI-CP-200  
제정일자 '24. 01. 15  
개정일자 24. 02. 22  
개정번호 1  
폐 이 지 11 OF 11

### 규정(안) 본문

- 제 24조(감사)**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적인 CP운영을 위해 공정거래관련 법규 및 필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 
② 대표이사는 공정한 감사 활동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, 감사에 따른 필요 자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  
③ 피 감사 대상 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관련 문서 및 서류 등을 요청할 시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  
④ 감사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 
1. 감사배경 및 목적  
2. 감사중점 및 대상  
3.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등

### 제 4장 기타

- 제 25조(문서관리)** ① 공정거래 담당은 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  
② 기업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CP 관련 자료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.  
1. 부서별 배포된 자율준수편람  
2. 부서별로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 
3. 부서별로 외부 거래(업무)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, 약정서, 공문 등  
4.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부서가 직접 수신한 문서 일체  
③ 공정거래 담당은 위 2항에 따른 문서보관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미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미비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.

- 제 26조(권한의 위임)**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-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8월부터 제정, 시행한다.